

미국법률설명서

(美國法律說明書)

<목차 안내>

들어가며.

제1장: 미국내 법치주의 전통과 의미에 대해서.

제2장: 미국법률은 어디에서 왔는가?

제3장: 미국법률은 누가 만드는가?

제4장: 미국법률은 누가 해석하고 적용하는가?

제5장: 미국법률은 누가 집행하는가?

제6장: 연방헌법에 대해서.

제7장: 연방법률에 대해서.

제8장: 주헌법에 대해서.

제9장: 주법률에 대해서.

제10장: 연방법원에 대해서.

제11장: 주법원에 대해서.

제12장: 소송에 대해서.

제13장: 변호사에 대해서.

제14장: 검사에 대해서.

제15장: 판사에 대해서.

제16장: 정치에 대해서.

제17장: 선거자금에 대해서.

제18장: 기업 또는 부자들에 대해서.

제19장: 언론에 대해서.

제20장: 소셜미디어 또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해서.

제21장: 법으로 안한다면?

제22장: 여론에 대해서.

제23장: 결국 또다시 민주주의에 대해서.

나오며.

<들어가며>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까지 <영어사용설명서>, <미국사용설명서>라는 길지 않은 분량의 전자책 (E-book) 2권을 써봤습니다.

이번에는 <미국법률설명서(美國法律說明書)>라는 전자책을 써보려고 합니다.

<미국법률사용설명서>라고 이름을 짓지 않은 이유는, 한국에 있는 일반대중들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직접 소송을 하거나 미국 정부에 직접 청원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 법률과 제반 사항에 대해서 대략적인 이해를 돕는 설명서의 개념으로 글을 써보겠습니다.

이번 전자책 역시 너무 잘 쓰려고 절대로 욕심을 부리지 않고, 가급적 되도록 빨리 일단 완성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전자책 역시 지루하고 산만한 문체 보다는, 가능한 쉽고 명확하게 써보려고 합니다.

제 경험이나 직관에서 파생한, 또는 제 주관적인 시각에 기초한, 생생한 이야기를 위주로 써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딱한 법률개론 또는 법률전문 학술서적과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학술서적이나 논문처럼 딱딱한 느낌을 주기 보다는 최대한 실용서적 컨셉에 부합하는 문체로 써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쉽게 쓴다는 것이 단순히 알팍한 책을 쓴다는 말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단언컨데>,

한번 더 강조합니다. <단언컨데>, 한국에 있는 대중들은 물론이고 한국의 법조계 누구보다도 제가 가장 깊숙하게 미국의 법조, 법률, 법원, 법조인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直接的 經驗)’을 해본 ‘사람들 중의 한사람(one of them)’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단언(斷言)을 사전에 찾아보면, “주저하지 아니하고 딱 잘라 말함”이라고 나옵니다.)

제 주관적으로는, 그렇게 단언적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럴만한 이유도 당연히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오늘도 이처럼 인사를 드리게 되어 여러모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21일 수요일 (한국시간),

미국에서,
필자 드림.

코리아베스트
www.koreabest.org

제1장: 미국내 법치주의 전통과 의미에 대해서.

첫번째 챕터로써, 미국내 법치주의 전통과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고 말해봅니다.

미국은 다문화, 다인종 기반의 연방국가로써 대단히 복잡한 사회구성의 역사와 문화,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각기 다른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한

문화권에서 상식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다른 문화권에서는 비상식적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질서 유지와 분쟁해결의 수단으로써, 법률이 기능하는 의미가 특별합니다.

다른 현대 법치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법률이 그 중요성을 가지지만, 미국에서는 특히 더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 중요하다는 말이, 미국에서 법치주의가 잘 작동한다는 것을 자동적으로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썩은 곳>이 바로 ‘미국 법조계’가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패했다고 하더라도, 제도로써 사회적 룰(rule)으로써 법률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대안, 또는 대체수단의 존재와 형태를 생각하면 더 그렇습니다.

미국의 법치주의를 논하기 위해서는,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마그나 카르타>라는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서가 있습니다.

인류역사에서 중요한 문서들이 무척 많이 있지만, 그 문서야말로 가장 중요한 문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미국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전개와 맥락, 그 전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간단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영국 왕의 전제정치로부터 의회가 견제를 시작하게 된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올리버 크롬웰이라든가, 영국 역사에 나오는 이런 저런 왕들의 행동, 또는 기행까지도 살펴봐야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자기들끼리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내전까지 치르게 되었습니다.

핵심은 결국 <왕마저도> ‘법률의 지배’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의적인 통치로 세금도 멋대로 거두고 대외전쟁도 계속 벌이고 기행마저도 자행하는 왕들을 겪어보다가, 의회와 왕이 싸우게 되었는데, 왕이 지는 바람에 의회의 조건을 일정 정도 받아들이고 타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적 배경의 맥락 하에서, 미국에서는 <왕의 자리>에 <법의 자리>, <법률의 자리>가 자리잡게 된 배경입니다.

즉, <왕의 통치>가 아니라, 그 자리에 <법의 통치>, <법률의 통치>가 자리잡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과 영국에서, 역사적 전개이자 정치적 합의, 사회적 귀결, 문화적 전통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제2장: 미국법률은 어디에서 왔는가?

미국법률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역사적 차원에서 말하자면, 미국법률은 <영국법률>에서 왔습니다.

실질적 차원에서 말하자면, 미국법률은 <나라에서> 왔습니다.

(1) 역사적 차원.

첫째, 역사적 차원에서 간단히 언급하자면 이렇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통상적으로 <영미법계(英美法系)>로 불리웁니다.

그 대척점에서 <대륙법계(大陸法系)>가 있는데, 유럽 대륙의 나라들이 그런 법적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법체계가 크게 보아서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로 양분되어 있는데, 미국의 법체계는 영국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영미법계로 분류됩니다.

물론 공산권의 법체계나 이슬람 법체계, 또는 미국 원주민의 법체계 등 다른 속성의 법체계도 언급되지만, 크게 보아서 주류 법체계에서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로 분류됩니다.

근대 일본이 독일에서 법체계를 계수했고, 대한민국은 일본에서 법체계를 계수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대륙법계의 법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도 당시에 영국법의 계수를 검토하기는 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재미있는 부분이지요.

하지만, <보통법>이라는 영국법의 체계상, 일본에는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써먹어야 하는 판례들이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국법체계를 계수할 수 없었다는 역사적 설명이 있습니다.

가정적인 이야기지만, 만약 일본에서 영국법을 계수했다면, 확률적으로 한국도 영미법계로 속했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당시 식민지 상황을 고려한다면 말이죠.

제가 대륙법계 법전과 영미법계 법전을 동시에 살펴보고 비교해 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세계 비교법 전문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전문적인 학술내용을 말씀드릴 위치는 아닙니다.

독일법이 얼마나 <개념적으로 탄탄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게르만 민족의 빈틈을 허용 않는 논리성, 대단히 깊은 철학적 전통, 그리고 사유의 정교함 등등 민족적 특성이 법률에도 당연히 반영이 되었겠지요?

여담입니다만, 게르만 민족이요, 참 대단한 민족입니다.

한때 유럽과 그 인접지역을 제패했던, 그 유명한 로마제국 마저도 정복을 못한 민족이 게르만 민족이고, 게르만 민족의 땅이었습니다.

일본법전과 한국법전을 동시에 살펴보고, 그 유사성에 대단히 놀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법도 개념상으로나, 체계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말해서, 세계적인 수준의 탄탄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 법전을 보면, 우리기준으로 보자면, 대단히 <엄성하다>는 점들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함부로 재단(裁斷)해서는 안되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법체계상, 그 빈틈이랄까, 그 법적인 빈공간은 자기들의 <보통법(Common Law)>에서 해결을 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과거 내린 구속력(拘束力)을 가진 판례(判例)들로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한국에서도 판례들이 있는데, 어떻게 다를까요?

법률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재미를 느낄 만한 부분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한국의 판례는 (그냥,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판례입니다.

미국의 판례는 법입니다.

그냥 법으로 기능합니다.

이 점이 크게 다른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회가 법을 만들지만, 미국에서는 의회에서도 법을 만들고 법원에서도 법을 만듭니다.

그렇지만 성문법이 판례법에 우위를 차지합니다.

덧붙이자면, 세계가 최근까지, 또는 요즘 글로벌화 되면서 많은 교류가 있고 그럼 점들은 법체계나 법률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거나 끼친다고 합니다.

요즘 보자면, 대륙법계도 영미법계 요소를 많이 채용하고 있고, 영미법계도 대륙법계의 요소를 많이 받아들이는 듯 합니다.

예전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설명들과 많이 추세가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미국 법률에서도, 그 법률이 많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댈 수 없는 요소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연방 이민법의 경우에는 대단히 정교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틀에서 원칙이 있는데, 그 예외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외 규정들에 대해서 또다시 예외를 적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륙법계의 정교성에 뒤지지 않습니다.

대륙법계에서도, 현대에 들어서 미국의 국력이 크게 신장되고 글로벌 파워를 구사하기 때문에, 국제 비즈니스나 금융분야, 기업 인수합병, 또는 IT 분야에서는

미국 기업들이 선도하기 때문에, 미국 법률이나 그 적용의 선례들이 한국에서도 많이 검토되는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 실질적 차원.

둘째, 실질적 차원에서 설명드립니다.

미국법률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왔습니다.

자고로 법률이라는 것은 <나라에서> 제정하고 시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이나 사회단체, 문화단체, 기업이나 특정 조직이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시쳇말로, 마피아나 조폭에서도 자기들끼리 적용되는 룰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특정 그룹에서 통용되는 것이지 법률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은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2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가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1개이고, 주정부는 주의 숫자만큼인 50개입니다.

연방정부도 법을 시행하는 주체이고, 각 주들도 각자 주법을 시행하는 주체입니다.

연방정부는 연방법을 담당하고, 주 정부들은 주법을 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법률적으로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특히 소송으로 가게 되면, 그렇게 무 자르듯이 명쾌하지는 않습니다.

예들 들어, 상해사건으로 민사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에, 연방법과 주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연방법원에서 진행해도 되고, 주법원에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제3장: 미국법률은 누가 만드는가?

미국법률은 누가 만들까요?

미국은 3권 분립의 민주공화정이기 때문에, 입법권은 입법부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입법부, 즉 의회에서 법률을 제정합니다.

이전에 잠깐 언급했다시피, 미국은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연방의회가 있고, 주의회가 있습니다.

두 의회 모두 법률을 제정합니다.

연방의회는 연방법률을 만듭니다. 주의회는 주법률을 만듭니다.

헌법은 이미 존재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선조 또는 윗세대들이 이미 헌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만들지는 않고, 법률만을 제정합니다.

헌법에 대해서는 개정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원에서도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 법체계가 보통법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케이스 로 (case law)를 통해서 판례, 또는 선례들을 축적해 나갑니다.

사회적으로 큰 중요성을 가지는 판례들도 있고, 크게 중요하지 않은 한 케이스만에 국한되는 그런 판례들이 있습니다.

즉, 모든 판례들이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판례는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기도 합니다.

이웃간에 발생한 작은 분쟁에 대해 내린 판결에 전체 사회가 반응할 필요는 없겠지요.

법률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연방법이 주법에 우선합니다.

의회에서 제정한 성문법이 법원에서 판결한 개별 케이스 결과보다도 우위에 있습니다.

위에서 대략 살펴보았는데, 여담입니다만, 저는 역사적으로 왜 대륙법계와 큰 차이점을 보이는 영미법계, 보통법계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큰 궁금점과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역사책을 보면, 프랑스의 노르만이 영국을 침입한 시점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면서, 영국의 보통법(Common Law)과 배심제(陪審制)의 기원에 관해 설명합니다.

그런데 교과서나 법률 관련 서적에서는 제가 찾아봐도 그 정도 언저리에서 설명을 하지, 속 시원한 설명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서, 주관적으로) 추측을 해봤습니다.

언제 기회되면 더 언급을 해보고 싶은 주제입니다.

다만 여기서 간단히 언급하자면, 프랑스에서 정복왕이 왔는데, 영국 지배층이 전쟁에서 지는 바람에 복속이 되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에는 분쟁이 있기 마련입니다.

분쟁의 원인을 따져보면, 상당 부분이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원인과 해결방법이 간단한 것이었다면, 애초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내막이라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노르만 계통의 왕들이 아무리 군사적 능력으로 피지배 국가나 사회를 힘으로 누를 수는 있어도, 무력 정복 시기를 지나서 행정에 의한 통치시기로 전환이 되면은, 칼로만으로 한 국가나 사회를 통치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 분쟁의 사실관계를 당사자들보다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왕이 지멋대로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자의적으로 왜곡해 버리면, 사건 당사자들은 당연히 불만을 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사회적으로 억울한 사람들이 속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민심이 멍들기 마련입니다.

종국적으로는 사회불안의 요소이자 사회 불안정 요소입니다.

언젠가는 자기들 정권의 위협요소이고, 언젠가는 민란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 지멋대로 분쟁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정복왕조가 왔는데, 당시 영국 각지에서 관습으로 해결하던 것을 공통의 룰으로써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커먼 로(Common Law)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왕의 룰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당시에 영미법계 특유의 배심제, 배심재판이 파생된 것은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전부는 아닐지라도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틀림없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왕이 설치한 법정에 와서, 분쟁 사건의 당사자들이 <거짓말 서커스>를 하는데,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왕이 임명한 판사들이라고 해도, 당사자들이 아닌 이상, 사실관계 확정 <실체적 진실>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영미법계의 배심재판의 의미라는 것이, 법적인 완전성이나 사실관계의 판단의 정확성 때문에, 그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실질적 의미는 사실관계의 오판시에 왕이 그 책임을 다 뒤집어 쓸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오판이 되는 경우는 배심원 전체에게 책임이 전가되고 분산되는 측면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판사 한명이 판단하는 것보다는 약 12명의 다수로 판단하면 더 중지를 모으는 면도 당연히 있었겠지요.

판사가 부패하면, 또 도리가 없는 것이지요. 부패한 판사 1인을 생각하면, 배심제의 가치가 더욱 더 훨씬 부각됩니다.

그러나, 배심제가 만능은 아닙니다. 미국 법정에 소환되어 오는 배심원 후보들을 보면, 법정 밖으로 쭉 길게 줄을 서 있는데, 그 모습이나, 인상, 옷차림, 행색 등을 보면, 또 제가 얘기도 해봤는데, 그 사람들은 법도 잘 모르고, 그냥 자기들 상식에 기초해서 판단하는 정도입니다.

법률적으로 대단히 전문적으로 훈련된 법조인, 법률전문가와 크게 다른 상황입니다. 그리고 배심원에 대한 매수나 협박도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배심원의 부패도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영국에 대한 역사적인 이야기로 돌아와서 살펴봅니다. 법률문제에 대한 판단이야 왕이 임명한 판사가 하는 것이지만, 사실관계의 판단과 그 확정 당사자들이 제일 잘 아는데, 한 당사자측이 태연하게, 또는 입에 거품을 물고, 거짓을 계속 주장하는 경우에 결국 배심제를 통해서 법적 분쟁을 해결한 것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도 그런 가능성을 추측해 봅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당사자가 승복을 하지 않는 경우가 문제인데, 그것을 왕이나 왕이 임명한 판사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배심원 체제를 통해서 해결한 것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일이 잘못되는 경우에 왕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배심원들이 책임을 지는 구조가 되는 것이겠지요.

아무튼 동서고금의 역사를 보면은, 왕조가 누대에 걸쳐서 내려오는 경우에는요. 가끔씩 기행을 벌이는 이상한 왕들도 있었고, 철학자에 버금하는 현명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왕조가 누대에 걸쳐 내려가면, 나름대로 그 왕조들의 <노하우>들도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노하우 없이, 왕조가 수백년 이상을 지속할 수는 없을 것이겠지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렇단 말입니다.

착한 노하우든, 나쁜 노하우든 그렇단 말입니다.

왕들도 잔머리가 돌아가는 왕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맨날, 허구헌날 술먹고 춤만 추는 왕들만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튼, 미국의 경우에는 자기들 위에 있던 왕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결국 왕하고 싸우고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미국 독립이나 독립 전쟁사에 대해서도 제가 언제 책을 써보고 싶은데요.

결국은 여러 미사여구(美辭麗句, 아름다운 말로 듣기 좋게 꾸민 글귀)를 빼고 보면은, 결국은 미국 독립전쟁이라는 것의 실체도, 자기들 왕한테서 나라를 <뺏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북미대륙 자체가 통째로 누구들한테서 뺏은 땅이라고 비판하거나 언급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미국 현지 사회에서 문화적으로 표현하기에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여러가지 역사적인 면을 놓고 보자면 그렇습니다.

미국 독립선언서라는 것도 보면은, 당시 영국 왕의 여러 실정에 대해서 거론한

것이 보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왕을 욕한 것인데요.

이런 저런 구실을 들어서, 왕을 욕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읽어보면 재미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입장을 뒤집어 보자면, 당시 영국 왕의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었을까요?

그 왕도 당시 식민지인들, 특히 식민지 지배계급에 대해서, 그리고 주변이나, 배후에서, 그 싸움이나 전쟁을 부추기는 상공업자 세력이나 금융세력에 대해서도 욕을 할려고 하자면 할 말이 많은, 그런 소재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공식적인 미국 역사책에는 나오지를 않지요.

제4장: 미국법률은 누가 해석하고 적용하는가?

미국의 법률은 법원에서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사법권은 사법부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그렇게 나옵니다.

연방헌법, 주헌법, 모두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그 사법부의 구성원은 누가 할까요?

연방법원은 행정부에서 지명을 하고, 입법부의 상원에서 인준을 합니다.

즉, 연방 대통령이 연방 판사들을 지명을 하고, 그에 대해서 상원에서 청문회를 거쳐서 인준을 결정합니다.

연방 판사들은 임기가 없습니다.

크게 도덕적으로 문제되는 잘못만 저지르지 않는다면,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자발적으로 은퇴할 때까지 합니다.

정년도 없습니다.

주법원은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주대법원의 경우는 보통 주지사가 지명을 하고 주의회에서 인준을 합니다.

임기가 있는데, 임기를 마치면, 주의 주민들의 일종의 재신임 투표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재신임 받으면 다시 또다른 임기 동안에 직무를 수행합니다.

어느 주의 사례인데, 50개 주가 전부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주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이 아닌, 1심, 2심 법원의 하급심 법원은 또다릅니다.

예를 들어, 어느 주에서의 1심 법원을 담당하는 판사들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 지역구에서 선거를 통해서 판사를 뽑습니다.

임기가 끝날 때쯤, 끝나기 전에, 재신임 여부를 물어 또 선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구의 판사들은 자신들의 재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에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또는 보일 수 있습니다. 은퇴가 임박하지 않은 이상에요.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을 안하지만, 그렇습니다.

제5장: 미국법률은 누가 집행하는가?

미국법률은 행정부에서 집행합니다.

행정기관 중에서도 법집행 부서에서 집행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와 법원 판결문을 집행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 law enforcement에 해당되는 표현인데, 어느 시의 경찰청일 수도 있고, 어느 카운티의 보안관 사무실일 수도 있고, 주정부나 연방정부의 법집행기구나 수사기구일 수도 있습니다. Marshall Service라고 불리는 기관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연방 법무부가 법집행의 주무부서이고, 수사기구로는 그 유명한 FBI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유명한 CIA는 정보기관입니다.

제6장: 연방헌법에 대해서.

이번에는 연방헌법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하겠습니다.

연방헌법에 대해서는 얘기의 소재가 많기 때문에 여러권 이상의 전자책 소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 헌법과는 구조적으로 유사합니다.

헌법 총론, 기본권, 권력구조에 대해서 한국헌법에 나오는데, 미국 연방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 순서가 다릅니다.

미국 연방헌법은 총론, 권력구조, 기본권, 이런 순서입니다.

주헌법에서는 보통 기본권이 권력구조보다 앞에 오는 식입니다.

연방헌법에서 총론은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는데, 무시하면 안됩니다.

연방대법원의 판례 중에서 중요한 판결들이 총론에서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권력구조 부분에서는 분리된 3권에 대해서 차례대로 나옵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대해서, 그 구성과 임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구성원들은 어떤 자격과 임기를 가질 것인지, 권한은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나옵니다.

연방과 각 주의 관계에 대해서 나오고, 헌법개정 절차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기본권 부분에서는 제1조에서 제10조까지가 특히 유명하고 중요한 부분인데, 국민들의 기본권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권리장전>으로 불리웁니다.

수정헌법 1조, 수정헌법 2조, 뭐 이런 식으로 불리웁니다.

연방헌법에 대해 제 의견을 첨부하겠습니다.

연방헌법에 대한 제 의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것입니다.

연방헌법이 법률적으로 완벽하다거나 법적 논리성의 정교함이 돋보인다거나, 뭐 그런 식은 아닙니다.

연방헌법이 미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부분은, 이것이 자기들이 영국에서 독립을 하게 되면서, 신생국가의 국체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고, 국가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자기들끼리의 일종의 <계약서(契約書)>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오늘날에도, 미국이라는 그 큰 국가의 운영이, 자기들 건국의 조부들이 서로 간에 계약을 맺은대로, 그 <계약서>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상이치가 계약서대로 되지만은 않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그런 믿음 하에, 그런 합의 하에, 그런 계약 하에, 미국사회가 지탱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7장: 연방법률에 대해서.

이번 장에서는 미국의 연방법률에 관해서 언급합니다.

연방법률은 그 도출원리와 범위, 권한 등이 연방헌법에서 연유하거나 파생됩니다.

그래서, 연방법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선행적으로, 선행조건으로 연방헌법을 이해하고 숙지해야 합니다.

연방법률에는 규정되어 있는데, 주법률에는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법률에는 있는데, 연방법에는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방헌법을 이해하면 이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연방헌법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권한을 분리시켰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민법이나 파산법 등은 연방법에서 규율합니다.

따라서, 주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관련 내용은 주법의 소관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법에는 있는데, 연방법에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간의 통상에 관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연방법에서 개입합니다.

왜냐하면, 개별 주안에서 일어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개별 주에게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만, 그런 개별 주간에, 즉 2개 이상의 주에 걸쳐서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 문제는, 연방정부가 개입할 수 밖에 없고, 그런 권한을 연방헌법에서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제8장: 주헌법에 대해서.

이번 장에는 미국 각 주별로 있는 주헌법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합니다.

50개주별로 전부 주헌법이 있는데, 규정 자체는 대동소이합니다.

하지만, 차이점들도 있습니다.

모든 50개 주헌법을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이 가는 주라든가, 유명한 규모가 큰 주들은 예전에 대략 살펴보았습니다.

인상깊은 부분도 있고, 실소를 금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주에서는 ‘나도 살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고, 이런 주에서는 ‘절대 살고 싶지도 않다’는 마음이 드는 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시시콜콜히 이 지면에 말하면, 나중에 제가 생각하는 미국에서 각종 크고작은 선거에서 상대방에게 악용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각 주의 법률은 각 주의 헌법에서 파생됩니다.

그래서 주 헌법을 이해해야만, 각 주의 법률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강조할 부분을 덧붙입니다.

예전에 어떤 영상을 보았습니다. 미국의 어느 주에서, 주대법원의 어떤 대법관이 인터뷰인가 어느 동영상에서 말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각 주의 헌법이 연방헌법의 스몰(작은) 버전이라고 편견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전이라서, 제가 그 대법관의 얘기와 설명을 듣고, 한참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연방헌법과 주헌법을 다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어느 순간 큰 틀에서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제 입가에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무엇인가 깨달음의 희열 같은 것이랄까요.

조금 더 생각해보면,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방헌법에서 보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들이 주정부와 주법률에도 당연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예전이라, 제가 연방헌법과 주헌법의 차이점에 대해 명확한 이해를 가지지 못할 때인데, 그 대법관의 설명이 어떤 측면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설명 자체는 길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냥 연방헌법과 주헌법이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뭐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한테는 크게 도움이 되는 설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전자책에 나오는 내용이 비록 제가 이런저런 것을 설명하고 있고, 저는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만약에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서 누구라도 크게 도움이 되는 분이나 학생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이 한 사람이라도 계시다면, 제가 이 글을 쓰는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제9장: 주법률에 대해서.

주법률은 주헌법에서 파생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미국 법률을 보고, 특히 주법률을 보다 보면, 이상한 점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법률이 일반사회의 일반 주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을 때가 있습니다.

듣기에 따라, 여러분이 무슨 얘기인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독소조항, 또는 나쁜 법, 즉 악법이라고 할 수 부분들입니다.

결국은 한 사회나 국가의 지배층들의 이해관계가 법률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세부사항을 이 짧은 지면에 언급할 수는 없기에 몇 가지만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로써 언급하겠습니다.

예들 들어, 민사소송법에서 시효문제를 들어봅시다.

한국 민소법에서 손해배상 청구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각 주별로 다릅니다.

어떤 주는 3년이고, 어떤 주는 더 짧고, 어떤 주는 훨씬 더 깁니다.

어떤 주는 1년 밖에 되지 않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법전에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1년이라고 합니다.

거칠게 요약하면, 그 사회의 기득권, 특히 기업들, 또는 금융세력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기업들, 또는 금융세력들의 로비를 받아서 주의회에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점때문에 제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른 예들 들어서, 특정 분야의 소송 때문에 당사자의 세부적인 개인정보를 상대방에게 주게 되면, 법률에서는 분쟁해결의 신속성 등의 미사여구로 정당화 하는데, 미국 현지에서는 그렇게 되면 또다른 범죄의 피해로 연결되는, 의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주지 않으면, 또는 사전에 (소송을 하겠다고) 미리 고지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조차 할 수 없게 원천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소송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산업분야에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소송을 제기하면, 당연히 연락처를 비롯해서 기본 정보가 자연히 알려지는데, 꼭 미리 얼마의 기간을 정해서 미리 주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정보를 사전에 미리 주게 되면, 범죄가 발생해서 소송을 방해해서 소송을 못하도록 하게 됩니다, (라고 의심이 드는 상황이 연거푸 일어납니다.)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기업이 미국 남부로 진출해서 공장을 지어서 현지에서 자동차를 생산한다 등등의 기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들은 미국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비교적 낙후된 지역들입니다.

경제적으로 낙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좀 쉽게 공감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기업적인 환경 등을 내세워 기업유치를 하고 그렇게 포장되어 홍보가 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주들의 주법률의 노동이나 고용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또는 굉장히 불리하게 되어 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흔히 예기하는 <노동의 유연성>이라는 미명 하에, 노동자의 생존권리가 묵살된다는 느낌마저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미명(美名) 하에 일반 노동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드는 법률 조항들이 있습니다.

주의회에서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10장: 연방법원에 대해서.

쓰다보니 시간이 걸리고 힘이 좀 들어서 지금부터는 간략히 더 빨리 써보겠습니다.

(이따가 어디 다른 장소로 이동해야 되서 또 그렇습니다.)

연방법원은 3개 층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1심법원, 2심 항소심 법원, 3심을 위한 연방대법원이 있습니다.

연방판사들은 이전에 언급한대로, 종신직입니다.

자기가 은퇴를 결정할 때까지 임기 없이 직무를 수행합니다.

연방판사들을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그들이야말로 <미국의 왕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됩니다.

물론 3권 분립에 따라, 어느 왕의 모든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3분의 1에 해당하는 권력에 한해서는 <왕과 다름 없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3분의 1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법집행 부서에서도, 입법부에서 만든 법에 따라, 법원에서 내린 판결에 따라, 기계적으로 법과 판결문을 집행하기 때문입니다.

영미법계의 보통법 전통에 따라, 판사에 대한 권위도 한국보다 더 높습니다.

제11장: 주법원에 대해서.

주법원도 3심제에 따라 3개 층위의 법원이 있습니다.

1심, 2심, 3심 법원이 다 있습니다.

제가 주관적으로 받은 느낌은 이렇습니다.

연방법원의 권위가 더 세고, 뭐랄까 절차에 대해서 더 진중(鎭重)하다고 할까요, 더 무게감이 있다고 할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주법원의 판사들도 그들의 법정에서는 그들이 <왕(王)과 다름 없습니다>.

어느 주법원의 미국 법정의 어느 한국인 통역사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한대로, 법정에서는 그들이 <왕>입니다.

재판하다가 법정모독이나 법정모독죄 등으로 판사가 걸면, 구치소에 가야 됩니다.

판사 앞에는, 또는 바로 양옆으로 근처에는 법정 경위들이 삼엄한 분위기로 서있습니다.

법원 기일 때문에 법원에 가보게 되면,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숨소리>도 조심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행여라도 판사들에게 밉보여 자기 사건에서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염려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12장: 소송에 대해서.

소송이라..

미국에서 소송이라...

한마디로 복마전(伏魔殿)입니다.

사전설명에 따르면, 복마전은 마귀가 숨어 있는 집이나 굴을 말합니다. 비밀리에 나쁜 일을 꾸미는 무리들이 모이거나 활동하는 곳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재건축시 각종 비리 때문에 복마전이라고 불린다는데, 미국에서 소송은 정말 복마전, 그 이상입니다.

마귀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큰 주제의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제가 언제 한가할 때 더 써보겠습니다.

제13장: 변호사에 대해서.

미국 변호사에 대해서.

제가 받은 느낌은 미국 변호사들은 일종의 <준사법기관>이다라는 것입니다.

영미법계 보통법 체계상, 미국 법원의 역할이 한국과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한국은 대륙법계 계통이라 <직권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판사들이 당사자들한테 호통도 치고, 직권으로 조사도 명하고, 뭐 그렇게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국 법원은 철저하게 <당사자주의>로 움직입니다.

당사자가 청구한 내용과 범위에서만 <판단하기만> 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법원에 뭐 청구, 신청, 청원할 때 사용하는 법률 문서의 제목, 즉 타이틀이 <Motion>입니다.

Motion 뒤에 to 부정사를 붙여서, 무슨 모션, 무슨 모션, 이런 식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motion to dismiss는 무엇인가를 기각해 달라는 청구이고, motion to compel이면, 증거조사 등에서 그 무엇인가를 강제해 달라는 청구입니다.

한국에서 보게 되는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은, 한국에서 정식으로

변호사로 불리지 않고, 그 무슨 외국법 자문사 개념으로 불리고 대우를 받게 되어서 그런지 몰라서, 급이 다소 낮춰지게 비쳐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이민변호사다, 그러면, 비자 업무나 취급하고, 영주권이나 따게 도와준다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 본토에서, 이쪽 기준으로 보자면, 사실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한국인들이, 이쪽에서 활동하는 주류(主流) 변호사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에 있는 한국출신 변호사들이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을 지라도, 영어구사능력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전체적인 그 실력이나, 문화적 이해도나, 법체계상의 여러 요소에 대한 구사능력이 비교적 부족하기 때문에, 본토의 정통 실력의 변호사들과 단순 비교하기에는 여러가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유튜브 영상을 보다보니까, 어떤 분야, 어떤 업종의 업자인 것 같은데, 자기가 미국에 와서 비즈니스를 하다가 어떤 계기로 필요에 의해 미국 현지 변호사한테 미국법 자문을 받아보니까, 미국 변호사 자문 비용이 생각보다, 소문보다 싸더라,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던데, 제가 그 영상을 보다가 웃음이 났습니다.

미국에서 소송을 한판 제대로 붙게 되면, 몇 년 가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큰 소송은 특히 그렇습니다.

미국 변호사들은 사건 수입당으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시간당 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몇 년 소송을 하게 되면, 중산층 웬만한 사람이 평생 모아둔 돈을 대부분, 또는 크게 탕진할 수 조차 있습니다.

미국은 경제구조 특성상 일반인들이 저축을 거의 하지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인임에도 불구하고 몇 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자신의 은행계좌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비교적 자기관리가 투철한, 또는 비교적 잘 된 개인에 속합니다.

그 몇 만 달러도 소송 몇 년 하면 다 날라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소송 거는 사람을 무섭게 생각하는 이유가 여러가지 이상일 수 있습니다만, 특히 일반인의 입장에서, 소송비용, 법률비용이 큰 이유입니다.

미국에서 소송은 변호사 없이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변호사들마저도 웬만한 사람은 자기 소송은 자기가 못합니다. 열불 나서, 분통이 터져서, 감정이 격해지기 때문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도 (변호사가 없을지라도 여러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나홀로 소송>이라고 불리는데, 미국에서는 <Pro Se> 소송이라고 불립니다. 라틴어에서 유래한 표현입니다.

법률표현이나 법률용어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이 많습니다. 프랑스어에서도 역사적인 이유로 그 유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 표현이나 용어를 봐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영어를 안다고 절대로 미국 법률 표현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라틴어>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인 이유는 이전에 언급했다시피, 미국 법률은 영국법에서 왔는데, 영국은 역사적으로 대륙에서 큰 영향을 받았고 법률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노르만 정복 시기 이후부터, 프랑스어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법률은 특히 로마법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예전의 로마와 그 유명한 로마법이 어디 언어입니까?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미국 변호사들이 문서상으로 쓰는 (주요부문에서, 주요표현에서) 법률언어, 법률표현은 일반적인 일상표현의 영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차치하더라도, 현지의 미국인일지라도 일상적인 영어만 안다고 이해할 수 있는 법률서식이 아닙니다.

반드시 법률공부를 별도로 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언어입니다.

제14장: 검사에 대해서.

미국 검사와 그 지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봅니다.

미국에서는 검사도 ‘변호사’(?)로 불리니까?!

물론 prosecutor라는 검사를 가르키는 영어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지역검찰청의 검사장은 줄임말로 DA라고 자주 언급되는데, 정식 명칭은 District Attorney입니다. 더 정식 이름은 District Attorney General입니다.

미국에서 검찰총장이나 법무장관을 가르킬 때는 Attorney General을 씁니다.

Lawyer도 변호사를 가르키고, attorney도 변호사를 지칭하는 말이지만, 두 단어가 약간 어감이 다릅니다.

Lawyer는 변호사 직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듯 하고, 사회적 직업이나 역할로서 언급되는 변호사 타이틀은, 그리고 법정의 업무와 관련된, 또는 그 주변의 통상의 화법에서는 attorney를 더 많이 쓰는 듯 합니다.

송무를 주로 하는 변호사나, 영국 법조계에서 그런 변호사를 가르키는 단어들도 따로 있기는 합니다.

민사소송이 걸리면, 원고(plaintiff)와 피고(defendant)의 대리 변호사들이 참전합니다. 변호사들끼리의 대리전이 벌어집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과 그 대리 변호사, 그리고 반대측에서 검사측이 형사소송을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한국식으로 용의자 선상에 있는 사람은 suspect라고 불리고, probable cause가 있으면 수사가 제기될 수 있는데 수사 결과 검찰이 혐의입증에 자신이 있으면,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됩니다.

사법처리를 위해 재판에 넘겨지는 것이지요. 물론 형사법원입니다. 민사법원이 아니라.

일단 그 기소 이후 단계부터는 suspect라는 상태에서, defendant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그 상태 또는 지위가 변경되게 됩니다.

유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beyond reasonable doubt 이상으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형사사건의 피고인은 판사재판(bench trial)으로 할 것인지, 배심재판(jury trial)으로 할 것인지 자기가 결정해서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사재판으로 하면,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모두 판사가 판단합니다.

배심재판으로 하면, 사실관계는 배심원단이 판단하고 피고인의 유무죄를 결정합니다.

배심원단이 유죄라고 결정하면, 판사가 법률관계와 그 형량을 결정합니다.

무죄라고 배심원단이 평결하면, 그 즉시 케이스는 종결됩니다.

물론 재심 사유가 있기는 한데, 무척 까다롭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는, 배심원이 무죄라고 하면, 그것으로 형사사건은 그 케이스가 종결됩니다.

유죄가 나오면, 피고인은 2심 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미국에서 <옥산복합체>에 대해서 더 얘기해 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군수산업의 <군산복합체>에 비견되는 것인데, 미국 사법시스템에 관해서 굉장한

회의감을 불러 일으키는 용어입니다.

민사사건에서 피고가 지게 되면, 결국 <돈문제>입니다. 돈으로 그 피해를 물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지게 되면, 결국 <감방>으로 가야 합니다. 시쳇말로 ‘콩밥’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옥소에서 옥살이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은 그 차원이 다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요.

미국 형사법정에서 판사는 정말 뭐랄까… 이런 비유까지는 인간세계에서 하기 싫지만은… 왕의 자리를 넘어서는 그 이상의 존재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제15장: 판사에 대해서.

미국 판사와 그 지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봅니다.

그들은 변호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판사가 되기 전의 직업 말입니다.

연방판사들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에서 인준을 합니다.

각 주의 판사들은 자기들 주의 헌법이나 법률에서 정한 방법으로 지명하거나 선출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지사가 지명하거나, 별도의 지역구 선거에서 뽑히는 것이지요.

제가 겪어본 경험에 의하면, 미국 판사들은 그 많은 수가 정말 악질들입니다.

제가 주관적으로 보는 관점은, 그 상당수가 사실 <범죄자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복이나 법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화이트칼라> 범죄자들이지요.

화이트칼라 범죄 특성상, 잘 잡히지도 않습니다.

용의선상에 올라도 도망가지도 않고, 오히려 범죄 피해자들을 여러 수단으로 괴롭히고 협박합니다.

지역 검찰이 제대로 수사 하기도 전에 그 검찰 책임자를 정치적으로 날려 버리려고 합니다.

물론 주의회에 썩은 정치인들과 유착이 되어 있어서 그럴겠지요.

자주 써먹는 방법이나 위협하는 방법은 탄핵절차입니다.

(물론 교과서적인 의미에서 어떠한 탄핵제도의 정당성은 그 사안에 따라서 그 존재필요성이 있겠지요. 하지만, 이 글에서는 그 남용이나 오용, 더 나아가 악용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배후에는 기업범죄 또는 금융범죄를 저지르는 악질 금융/기업 세력과 유착이 되어 있겠지요.

정말 악질 중에 악질들입니다.

제가 언젠가 소송범죄 등과 관련된 제 시각이나 경험담은 별도로 정리해서 추가적으로 언급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제가 관여된 어떤 민사소송에서 1심 판사가 있었는데, 제가 직접 경험해 보았으니까 제가 직접 판단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흔히 하는 얘기로 ‘경험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 확실한 얘기입니다.

그 판사가 문제가 있었는데, 나중에 주지사에 의해 주대법원 대법관에 지명이 되고 주의회에서 인준마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법원들, 특히 주법원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다른 판사 얘기입니다.

그 판사는 법원기일에 제가 법정에 갔는데, (그때 코로나 시기라서 판사는 화상으로 연결해서 대화함) 아무튼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무슨 무선통신 장치를 사용해서 마치 외부와 의사소통을 하는 듯 했는데, 제 발언을 중간에 가로막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속기록에서 기록이 남기면 항소 근거가 되는 발언이기 때문에 그것을 원천봉쇄하라는 어떤 오더(?)를 받은 듯 보였습니다.

제가 그 판사를 형사고소 했는데, 나중에 다른 형태의 보복도 받았습니다.

꺾어보니 경찰도 썩었습니다.

경찰 수사관도 유착된 듯 보였습니다.

제16장: 정치에 대해서.

결국 정치가 중요합니다.

미국 법조계를 강타하고 정화작용을 하려면, 법조계 내부적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들보다 더 큰 권력, 특히 더 큰 정치적 권력을 가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힘을 길러야 합니다.

제가 미국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현재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여러가지 이상 있습니다.

제17장: 선거자금에 대해서.

미국 정치에서 선거자금은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국 선거는 많은 돈이 듭니다.

한 개인이 해결할 수 없거나, 감당할 수 없거나, 감당하는 것이 권고되지 않는 범위의 금액입니다.

선거자금에서 모금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선거자금 모금에 대해서도 여러 각도에서 리서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18장: 기업 또는 부자들에 대해서.

미국 정치에서 부자들이, 또는 큰 기업들이 큰 영향력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미국정치나 미국선거에 말이죠.

선거자금을 뒤에서 대주기 때문에 그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합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당선된 정치인들은 그들을 위해 여러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화이트칼라 범죄를 덮어주거나 같이 저지를 수도 있고요.

부자들과 대기업들을 위한 감세정책과 감세입법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주지사가 되면, 감방에서 그 화이트칼라 범죄자들을 빼올 수도 있습니다.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이지요.

사실상의 <합법적 탈옥>인 셈입니다.

(교과서적으로 사면제도의 정당성은 사안에 따라 나름대로 있겠지만, 이 글에서는 그 오용, 남용, 악용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돈없고 힘없는 잡범들은 몇년씩, 중범죄자들은 수십년씩 감방에서 옥산복합체의 먹잇감이 되어 썩게 됩니다.

그러나 돈있고 힘있는 범죄자들은 법의 이름으로 탈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썩어도 너무 썩었습니다.

미국사회가요.

그런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나, 트럼프 행정부나, 오십보 백보입니다.

바이든은 퇴임전에 사면을 단행했고, 트럼프는 취임 하자마자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제19장: 언론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잠정결론을 내린 것이 언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 법조계도 썩고, 정치계도 썩고, 기업계도 당연히 썩고, 특히 글로벌 금융계는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엄청나게 썩은 것을 넘어서 악랄하게 범죄적입니다.

대중들에게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정통 언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나쁜 놈들도 제대로 된 언론이 무서울 것입니다.

제가 미국언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꾸준히 그 분석작업을 해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제20장: 소셜미디어 또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해서.

주류 언론이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면, 그 대안으로 대중들에게 직접 호소하고 어필할 수 있는 수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결코 아닙니다.

잘 모릅니다.

아마도 그 이해도가 평균 이하일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을 안하니까요.

하지만, 누군가는, 특정 팀에서 팀내 누군가는, 좋은 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21장: 법으로 안한다면?

사회적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을 안한다면?

법치주의로 해결을 안하면, 그 반대개념이 대안방법으로는 인치주의, 또는 실력주의, 또는 주먹주의로 불리는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피아나 야쿠자, 삼합회, 기타 조직에서는 법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자기들끼리 분쟁이나 문제를 해결을 한다고, 과거 그렇게 시도했다는 풍문이 있습니다.

일반사회에서 그런 방법으로 분쟁이나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요. 여러면에서요.

그리고 꼭 법적인 해결책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인 해결이 직접적인 해결책이지만, 그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명국가에서 문명적인 다른 방법들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언론을 이용한 공격이나 사회적 공격, 또는 사회적 캠페인입니다.

문명적이고 합법적인 공격 방법들입니다.

제22장: 여론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론>이 중요합니다.

결국 현대의 대중민주주의 체제의 국가에서는 <여론>이 중요한 듯 보입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여론형성>도 중요하겠지요.

여론을 형성하려면, 그 메커니즘(기제)을 알아야 하고, 그 적절한 메시지나 콘텐츠가 있어야 하고, 그에 맞는 전달수단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대중적으로 확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23장: 결국 또다시 민주주의에 대해서.

결국은 또다시 민주주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가지 문제점들, 각종 모순점들, 각종 한계점들이 심각하게 노정되어 있거나 내재되어 있는 것이 현재 민주주의 체제입니다.

그러한 문제점, 한계점, 모순점들도 결국은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시도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독재체제나 전체주의체제로 갈 수도 없고, 불법, 탈법, 비합법, 비법률, 비법치주의, 실력주의, 주먹주의, 인치주의로 각종 사회문제나 개인분쟁을 해결할 수도, 권장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민주주의 내에서, 민주주의를 통해서, 민주주의에 의해서, 여러 모순,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지만,

사실 그것이 절대로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그렇게 쉬웠으면 진작에 문제해결이 되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시도하는 것을 현 시점에서 포기할 수는 없겠지요.

<나오며>

오늘은 <들어가며>, <전체 23장>, <나오며>로 구성된 전자책을 써봤습니다.

조만간 다른 소재, 다른 주제, 다른 시각, 또는 다른 표현으로 독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서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미국에서,
필자 드림.

코리아베스트
www.koreabest.org